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1. . . (제 회)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업도시과장
제출 연월일	.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 일자 : 2011년 월 일

제출 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타법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정리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정에 따른 법조문 신설 (안 제17조제5호마목 신설)
- 나. 개발행위허가 시 규모제한 배제대상 건축물 확대 및 공장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완화.
(안 제17조의1, 제17조의2, 별표 25호 신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마목 (3) 신설에 따라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기반시설(도로)의 너비 단서 조항 신설 (안 제21조)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개정)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업지역 안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를 “일반산업단지” 로 수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80퍼센트)” 완화적용.

(안 제58조제4호, 제5호 개정)

바.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및 지역 실정에 맞지 아니한 조항에 대하여 삭제

(안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62조제2항)

사. 타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안 제21조 , 제21조제3호, 제22조제3호, 제58조제4호 제58조제5호,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54조의2, 제70조제1항제1호)

아.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법령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일부수정

3. 내 용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 3) 「건축법 시행령」
- 4) 「문화재보호법」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조례에 반영

다. 예산관련 사항 : 없 음

라. 기타 참고자료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 제17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7조의1,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영 제57조 제1항1의2 “다” 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과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제17조의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1의2 “라” 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호 중 “5천제곱미터” 를 “ 1만제곱미터” 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를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법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읍이 아닌 지역은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마목 (3)의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인 신축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일반도로로 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 농·어·축 산업용의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로 하고,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을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으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 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중 “영 별표 1” 을 “영 별표 1의2” 로 한다.

제26조,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 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 으로 한다.

제58조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로 한다.

제61조 중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을 “「농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2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
조 제1항의” 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로 한다.

제65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를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를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 3의2 , 영 제57조1의2” 로 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
련) 1항 더목 중 “다목의 군사시설” 을 “라목의 군사시설” 로 한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1항 타목 중 “별표 1 제3호 라목” 을 “별표 1 제2호 마목”
으로 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1항 사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항 하목 중 “부칙 제19조” 를 “부칙 제20조” 로 한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조 관련) 1항 사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별표 25】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7조의1 (개발행위에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등) ①영 제57조제1항1의2 “다” 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과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p>제1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등) ①영 제57조제1항 1의2 “라” 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p> <p>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전관리지역 : <u>5천제곱미터</u> 미만 2~4. (생략)</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 ----- -----</p> <p>1. 보전관리지역 : <u>1만제곱미터</u> 미만 2~4. (현행과 같음)</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3 (생략)</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 -----</p> <p>1~3 (현행과 같음)</p>
<p>제21조(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p> <p>1. <u>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제21조(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영 별표 1의2----- ----- ----- -----</p> <p>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건축법」적법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읍이 아닌 지역은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 합계가 <u>1,000제곱미터 이상·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이상인 건축주택의 경우, 진입 도로의 너비는 일반도로로부터 4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다만,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농·어·축산업용의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p> <p>1.~9. (생략)</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영 별표 1의2----- ----- ----- ----- ----- ----- ----- 1.~9. (현행과 같음)</p>
<p>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생략)</p>	<p>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 ----- ----- ----- 1.~5. (현행과 같음)</p>
<p>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p> <p>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생략)</p> <p>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p> <p>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p> <p>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삭 제></p> <p>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p> <p>5.-----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p> <p>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 -----</p>

현행	개정안
<p>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생략) 1.~21.(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u>『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p> <p>④ (생략)</p> <p>제65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현행과 같음) 1.~21.(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 ----- -----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 -----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2~3 (생략)</p> <p>②~⑤ (생략)</p>	<p>제70조(분과위원회) ① ----- ----- ----- -----</p> <p>1. -----영 제55조제3항,3의2, 영제57조1의2, 제20조제1항제2호 ----- -----</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p>1. 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너. (생 략)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u>다목의 군사시설</u> 러.~머. (생 략)</p>	<p>1. ----- ----- 가.~너. (현행과 같음) 더. ----- ----- <u>라목의 군사시설</u> 러.~머. (현행과 같음)</p>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p>1. 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 카 (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u>별표 1 제3호 라목의</u> <u>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 1) ~ 5) (생 략)</p>	<p>1. -----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 ----- ----- ----- <u>별표 1 제2호 마목의</u> ----- ----- ----- ----- ----- 1) ~ 5) (현행과 같음)</p>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p>1. 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중 휴게음식점, 라목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파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 한다)</p> <p>가. ~ 파. (생 략)</p> <p>하. (생 략)</p> <p>1) (생 략)</p> <p>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p> <p>거. ~ 피. (생 략)</p>	<p>1. ----- ----- ----- ----- ----- ----- ----- -----</p> <p>가. ~ 파. (현행과 같음)</p> <p>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부 칙 제20조에 ----- ----- -----</p> <p>거. ~ 피. (현행과 같음)</p>

【별표 25】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설치기준(제17조의2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0m 이내	35,000㎡ 이상	-건축물 집입도로 너비 : 4m이상 -기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허 가운영지침에 의함.
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건축물 집입도로 너비 : 4m이상 -기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함.

비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 산정 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업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연 락 처	(054) 950 - 6341